

2026년 공군 일반임기제군무원 2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공군 일반임기제군무원 2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공 군 참 모 총 장

1. 개 요

가. 채용직위

부 대	채용 직위	채용 직급	채용 인원(명)	근무 예정지	임용 예정일
항공우주안전단	단장	행정 2급	1	서울	'26. 11월 2주 이후
공군대학	총장	항공 2급	1	대전	

* 임용예정일은 채용심사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다. 관련법령

- 군무원인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 응시요건 및 직위별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6. 9. 16.)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①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3)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나. 직위별 응시요건

공통요건

모든 채용직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인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예정)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 예시: '26. 8. 24. 시험공고의 경우 '23. 8. 24.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 **‘군(공)무원, 학위(자격증 요건 제외), 민간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 * 예시: '26. 8. 24. 시험공고의 경우 '23. 8. 24. 이후 퇴직자이면서, '23. 8. 24.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 **민간경력(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9페이지에 명시된 기준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인/단체 등록증, 법인/단체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학위증명서와 함께 학위논문 국문 초록 및 목차(논문 제목 포함) 제출 필요 (단,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료는 학위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학위요건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가 표시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 받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공증, 번역사실 확인서, 진위공증서류(한국연구재단 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함.
⇒ **학위요건으로 지원하더라도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민간경력 요건은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군인, 군무원 포함) 합산 불가능
- 근무경력기간 계산, 학위·자격증 등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6. 9. 16.)**을 기준으로 산정
 -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편집 여백”

채용직위 응시요건

상기 [공통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속/직위	응시요건 및 주요업무	
항공우주 안전단 / 단장 (일반임기제 행정 2급)	응시 요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인경력] ②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중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인경력] ③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상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공)무원경력] ④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공)무원경력] ⑤ 관련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8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경력] ⑥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경력] ⑦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 분야: 항공안전 또는 항공정책 분야 **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주요 업무	• 소속 부서 지휘·감독 및 항공안전단의 임무·기능 수행 • 전문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 • 안전관리 기법 연구 및 발전 • 항공·방공유도탄 분야 과학적 사고조사기법 개발 및 (의명)안전사고조사 주관 • 비행규칙·절차 등의 표준화 및 국제기준 검토·반영 • 군 항공관련 법령 및 제도, 공역관리체계 연구·발전 • 국지계기절차 안전성검토 및 비행안전영향평가 업무 수행 •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장비 운용(훈련) 및 관리 • 서울지역 장병 근무지원(수송, 보급, 행정, 관사·숙소관리 등) 및 군종업무 • 전직 및 모병지원, 위탁생 관리

소속/직위	응시요건 및 주요업무	
공군대학 / 총장 (일반임기제 항공 2급)	응시 요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인경력] ②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중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인경력] ③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상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공)무원경력] ④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공)무원경력] ⑤ 정치학, 경영학, 국방정책학, 교육학 또는 항공우주학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8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경력] ⑥ 정치학, 경영학, 국방정책학, 교육학 또는 항공우주학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위경력] ⑦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 분야: 교육(정책, 관리운영), 국방(정책, 관리운영), 군사(전략, 전력, 작전), 항공우주력 분야 **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주요 업무	• 공군대학 구성원의 지휘·감독 • 공군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시행 및 감독(교육 및 교관 운영 등) • 외국군 수탁장교 학과운영 지도 및 감독 • 공군대학 전쟁종합실습 통제 및 감독 • 공군대학 교육생 평가 및 학적 관리 • 공군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중·장기 발전, 복지/사기, 군수, 보안, 감찰/안전 등)

3.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요건 적부심사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

※ 면접방법: 응시자별 개별면접[직무수행계획서 발표(10분 이내) 후 면접 진행]

나) 면접 평가요소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 | | |
|-----------------------|--------------------|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

다) 합격기준

- ①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임용추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복수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

※ 면접 합격자 확정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시 임용이 불가하며, 또한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함.

4. 시험일정

구 분	시 험 일 정	합격자 발표	비고
원 서 접 수	8. 31.(월) ~ 9. 3.(목)	-	우편 접수
서 류 전 형	9. 10.(목) 예정	9. 14.(월) 예정	홈페이지 게시
면 접 시 험	9. 16.(수) 예정	9. 18.(금) 예정	홈페이지 게시
신원조사(인사검증) 서류 접수	9. 18.(금) ~ 9. 23.(수)	-	우편, 전자메일 접수
임용예정일	'26. 11월 2주 이후		개별통보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 (<https://rokaf.airforce.mil.kr>)의 「공군모집⇨커뮤니티⇨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에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5. 응시원서 서류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26. 8. 31.(월) ~ 9. 3.(목)

나. 구비서류 제출방법

1) 제출방법: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26. 9. 3.(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 직접방문,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

2) 제출주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붙임 9”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6. 응시 구비서류

※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제출 시

시험공고일('26. 8. 24.)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엄격하게 적용 중이니 발행일 확인 필수**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반드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목록표 1부: **붙임 2** 서식

3.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요망**

- 군인, 군무원: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공무원, 민간경력자: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4.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학위증명서(논문 국문 초록·목차 포함), 자격증 사본 등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지원하더라도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경력 무관 요건일 경우에도 경력이 있을 경우 제출).

5. 민간경력 진위여부 검증서류(민간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확인서

* **군인, 공(군)무원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6.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외국 학위증명서는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7.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 (공군 군인/군무원 현역(재직) 및 전역(퇴직)자 제외)

8. 이력서 1부: **붙임 3** 서식

9. 주요업적 기술서 1부: **붙임 4** 서식

10.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붙임 5 서식
11.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6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7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8 서식 * 공군 군인/군무원 현역(재직) 및 전역(퇴직)자만 제출
14.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15. 응시표 회송용 편지봉투(등기우표 부착) 1매: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지원자 응시표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표 미부착, 주소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회송용 우편봉투(등기우표 또는 선납등기라벨 부착) 미동봉 시, 재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봉하여 제출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대상: 경력요건 해당자

- **현직 군인 또는 군무원:**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군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제출
* 복무확인서, 약식자격표 등 인트라넷에서 응시자가 임의 출력한 서류는 미인정
- **전역(퇴직) 군인 또는 군무원:**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 제출
–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민원실 또는 계룡대 민원실로 발급 신청
–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발급 신청(2~3일 소요)
- **기타 공무원, 민간 경력자:**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단, 민간경력자는 민간경력 진위여부 검증 서류(4대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해당 직책과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반드시 명시**
(직책, 직무내용, 근무기간은 서류전형 심의시 결정적 고려요소이므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경력 응시자**는 **‘법인(단체) 등록증’** 및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 경력’ 증빙자료**(법인/단체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 등) 제출

《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i)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ii)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 중 ‘자격증’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법인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근무경력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중복된 기간의 경력은 1개의 경력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고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 번역사실 확인서) 및 진위공증서류(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을 제출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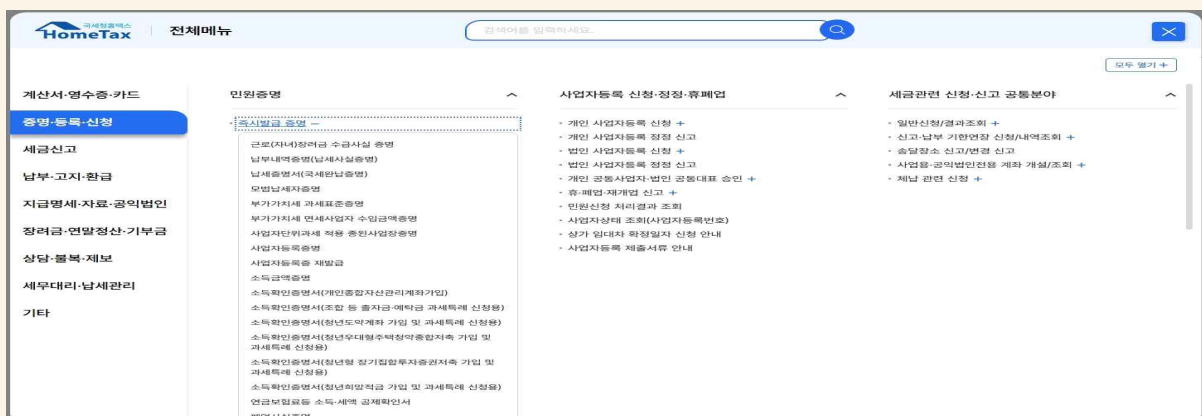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 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7.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구 분	근 무 기 간
일반임기제공무원	▪ 최초 계약기간: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8조(채용기간 연장) - 임용일 기준 60세 초과자 또는 임용일 후 1년 이내 60세 초과(예정)자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함.

*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근무예정지역 및 임용 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1)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가)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천원)	하한액 (천원)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90,277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3 7.임기제공무원

*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지급

2) 임기제의 경우 임용일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8. 기타 유의사항

가.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명예전역(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퇴직) 불가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 동일한 공고/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자.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카. 채용직위별 직무내용은 채용부대 사정에 따라 채용계약서 체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연 락 처: ☎(042)552-1452/1457, (군)920-1452/1457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공군 일반임기제군무원 2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군참모총장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위/ 응시직급	/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부착하는 란 (“전자수입인지” 인 경우 원서 뒤에 첨부)
전자우편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 공군 일반임기제군무원 2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위/ 응시직급	/		(한자)
2026년 월 일			
공 군 참 모 총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PC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위/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위/직급을 기재함
(예 : 항공우주안전단장 / 행정 2급)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일반임기제군무원	금 액
전문군무경력관 가군(5급) 이상	1만원
전문군무경력관 나군(6·7급)	7천원
전문군무경력관 다군(8·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면제(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반드시 첨부)

※ 응시원서 內 응시표 절취 금지

[붙임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 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① 응시직위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응시직위	자 격 요 건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②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목 록	내 용

※ “① 해당 자격요건”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③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소속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지 소속 근무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 표시

가 능	불 가 능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시험 응시 및 원서제출이 불가함

※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 명)

공군참모총장 귀하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예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응시직위 (직급)	응 시 자 격
00기관 00장 (행정 2급)	① 대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2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2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8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관련 분야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

[작성방법]

①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응시직위(직급)	자 격 요 건
김공군	00기관 00장 (행정 2급)	①, ②, ③, ④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 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대로 기재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명	응시직위(직급)	자 격 요 건
김공군	00기관 00장 (행정 2급)	① 대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②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1) ①, ②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내 용
1. 경력증명서 1부	① 대령진급(2급승진)일: '02년 00월 00일 ② 00부대 000담당('05.3. 1. ~ '09. 5. 1. / 00년00월00일) 00부대 000담당('10. 1. 3. ~ '12. 6. 2. / 00년00월00일)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2) ③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내 용
1. 학위증명서 1부	① 000대학교 000 박사('00. 0. 0.)
2. 학위논문 국문 초록 1부	① 상기 학위 해당 논문
3. 경력증명서 2부	① 00부대 000담당('05.3. 1. ~ '09. 5. 1. / 00년00월00일) ② 00회사 000담당('10. 1. 3. ~ '12. 6. 2. / 00년00월00일) ※ 학위 요건에 경력 필요시 관련 경력도 기재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3) ④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내 용
1. 경력증명서 2부	① 00회사 000부장('05. 3. 1 ~ '09. 5. 1. / 00년00월00일) ② 00회사 000과장('13. 1. 1. ~ '15. 6. 1. / 00년00월00일)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직위별로 작성 ※ 공무원경력(군인, 군무원 포함)과 합산 불가능하며 민간경력만 인정됨.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주요업적 기술서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의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유의사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구체적인 배경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의 작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각급 채용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직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수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 명 :

(서 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군무원을 지원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선발담당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란에 ☒ 표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 수집 및 이용 목적 : 응모한 직위의 시험자료 활용 및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자) : 지원자의 경력 및 학력 증명서 발급 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응시자의 제출자료 진위여부 확인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자격 조회(검증)에 관한 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026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인사검증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사검증
- o 수집 항목
 - 국방인사정보체계 정보 중 근무경력, 교육, 진급/강등/휴·복직, 근무평정, 군경력, 군사특기/직렬, 상훈, 처벌, 휴가, 개명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정보 및 처분사항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사검증 목적 달성 후 파기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군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인사검증 의뢰 기관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군무원 임용
- o 제공항목 : 인사검증 결과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군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인사검증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계급 :

군번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보내는 사람

[공군 군무원채용 응시서류 재중]

공군 항공우주안전단장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042) 552-1452, 1457

우) 3 2 8 0 0